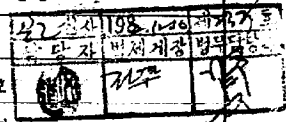


신당지구	1,519,299 중 218,181	서울특별시청	40. 10. 21 82. 12. 31	40. 10. 21 83. 12. 31	신당
청량리지구	1,100,182 중 122,314	"	40. 10. 21 82. 12. 31	40. 10. 21 83. 12. 31	"
장안명	1,940,638	"	76. 11. 20 82. 12. 31	76. 11. 20 83. 12. 31	"
경인	7,313,629	"	68. 1. 18 82. 12. 31	68. 1. 18 84. 12. 31	2"
김포	4,706,334	"	68. 1. 23 82. 12. 31	68. 1. 23 84. 12. 31	2"

나. 신문공고

- 1) 공고종별 : 임간제2개사 및 시보개제
- 2) 소요예산 : 1,158,080(4단x40항x3,290원x2개사x1.1)
- 3) 지출과목 : 잠실토지, 사무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 4) 지출방법 :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출함.

제2안 공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잠실, 강동, 영동 1,2 및 1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장안명, 경인, 김포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하여야 한다.

2. 관계 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한다.

1982. 12. 15

서울특별시청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내역

"제2안 가 항 이기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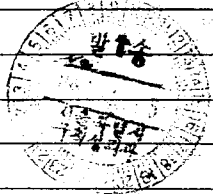
(도면생략)

제2안

수신 수신처참조

3202

제목	동 건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잠실, 강동, 영동1,2 및 1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장안평, 경인,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통보하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종합건설본부장(토목부장), 강동, 강남, 중구, 동대문, 강서구청장.	
제4안	
수신	공보관
제목	동 건
1.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잠실, 강동, 영동1,2 및 1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장안평, 경인,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되었기 입간신문 및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4안 (나항 1)~4) 이기시행	
첨부 공고문 사본 5부. 끝.	
제5안	
수신	총무처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잠실, 강동, 영동1,2 및 1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장안평, 경인,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 하였기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2부. 끝.	
제6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잠실, 강동, 영등1,2 및 7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잠안평, 경인,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개회변경(기관연계)인가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끝.